

#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 제 1 절 총 칙

이 시행세칙은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8조에 의거하여 각 선거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 제 1 장 선거권, 피선거권

제 1 조 (선거권) ①총·부학생회장의 선거권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를 등록하였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

②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권은 위①의 해당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에게 있다.

제 2 조 (피선거권) ①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전공)학생회장·부학생회장은 총·부학생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총·부학생회장 입후보자, 차기 학부(과/전공)학생회장·부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③선거 시행 당해 단대 학생회 임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된다.

###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는 당해 연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중앙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해 연도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③기타 중앙선관위 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는 위원장 권한으로 대의원 중에서 대학별 각 1명씩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④중앙선관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⑤중앙선관위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단대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임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총·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 5 조 (기능) ①중앙선관위는 총·부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

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관위는 당해 총·부학생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 6 조 (개회 및 의결) 중앙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시행세칙 중 제33조, 제35조의 결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장 단대선거관리위원회

제 7 조 (구성) ①단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대선관위”라 한다)는 당해 연도 단대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의 제반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단대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해 연도 단대 학생회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③단대선관위는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8 조 (위원장의 임무) 단대선관위 위원장은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9 조 (기능) ①단대선관위는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단대선관위는 당해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 10 조 (개회 및 의결) 단대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 관련된 시행세칙 중 제33조, 제35조의 결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 4 장 선거 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제 11 조 (선거일 공고) ①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일정을 투표일 30일 이전에 확정 공고한다.

②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투표는 매년 11월 중 동시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의 경우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

제 12 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중앙선관위 및 단대선관위는 해당 선거인명부를 투표일 2일 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학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투표자 및 선관위 확인을 표기한다.

③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내 구성원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 5 장 선거비용

제 13 조 (비용부담) 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 14 조 (비용책정) ①본 절의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책정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후 책정한다.

②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비용은 각 단대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용책정 후 입후보자의 증감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비용집행) ①총·부학생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가,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단대선관위가 각각 집행한다.

②단대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

## 제 6 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제 16 조 (등록) 총·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입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당해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원(소정 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각 1부
3.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4. 각서(소정 양식) 1부
5. 본 회 회원의 추천서(소정 양식) 1부
6.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
7. 입후보자 소견문 1부(한 조에 1부, A4용지 2장 내외)
8. 명함판 사진 각 1매
9. 참관인 명단(총·부학생회장은 8명,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은 2명, 온라인 선거 시 선거운동본부 당 2명) 1부

제 17 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①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6.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②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3. 당해 대학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6.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제 18 조 (입후보자 등록방법) 총·부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2인 1조가 되어 출마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공고)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투표권자) ①총·부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인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를 등록하였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

②각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 투표인은 위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회원인 자로 한다.

제 21 조 (선거운동) 중앙선관위와 단대선관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관할한다.

1.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다.
2. 각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일시, 장소는 선거 일정에 포함하여 공고한다(총·부학생회장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2회,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횟수는 소견문 전문을 읽는 것을 1회로 간주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시 소견 발표회를 온라인 게시물로 대체할 수 있다.
3.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의 내용, 규격, 부수 및 게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선관위가 정한다.
4. 각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금품제공, 폭행 및 협박, 유언비어 유포, 불순한 언동, 타 후보의 비방,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교외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6. 각 선관위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 발표 행위를 할 수 없다.
7. 등록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주재 하에 선거 관련 제반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8. 온라인 선거 시 모든 게시물은 선관위의 승인 후 게시할 수 있다.

## 제 7 장 투·개표 및 당선인의 결정

제 22 조 (투표방법) 투표 방법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단, 선관위에서 온라인 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선거유효) 본 절의 선거는 유권자 35%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제 24 조 (투표시간) 본 절의 투표 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까지로 하고 3일 이내로 한다. 단,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1일 연장할 수 있다.

제 25 조 (투표장소) 각 선관위는 학내 승인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관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투표 장소에 상주할 수 없다.

제 26 조 (참관인) 투·개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참관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투표장, 개표장, 투표함 이송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제 27 조 (투표 요건) ①투표 시 투표권자는 신분증, 실물 학생증 및 모바일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 시에 선거인명부와 대조 날인한다. 단, 인장의 미지참 시에는 서명으로 대체한다.

②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투표권자는 투표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투표를 할 수 없다.

③투표 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다.

제 28 조 (개표) 개표는 해당 선관위원이 각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나는 즉시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봉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집계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시 개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후보자의 참관인 입회하에 집계한다.

제 29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당해 선관위에서 제작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당해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표하지 않은 것
4. 어느 기표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2개 이상의 기표란에 ○한 것
6. ○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식을 한 것
7. 한 기표란에 중첩된 ○표와 당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표 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

제 30 조 (당선인 결정 및 당선인 임기) ①당해 선관위는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당선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②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③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에 의해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④총·부학생회장, 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각급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재선거) 다음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

3.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4.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하는 경우
5. 본선거에서 총학생회, 단과대학 출마자가 없어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 32 조 (보궐선거) 다음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기 만료 150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이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1. 학생총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2.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3. 기타 총·부학생회장 및 단대 학생회 회장·부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보궐선거로 뽑힌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 8 장 이의신청

제 33 조 (이의신청) ①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개표가 종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는 이의서 및 관계자료를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이의 내용을 심의·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거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선거심판위원회는 제소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심판위원회는 당해 학생지도위원회로 한다.

제 34 조 (당선공고) 당해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9 장 벌 칙

제 35 조(입후보자 등록 및 당선취소) 당해 선관위는 다음의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무효를 결정한다.

1. 본 절 제16조 1, 4, 5호의 서류작성을 허위로 한 자
2. 본 절 제21조 3, 4, 5, 6호를 위반한 자
3.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한 자

제 36 조 (처벌) 이 시행세칙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가 이를 처벌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 3 절 대의원 선임 시행세칙

#### 제 10 장 대의원회

제 37 조 (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부(과/전공), 학년별로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8 조 (자격) 대의원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학 중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方正한 자
3.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부회장, 집행부,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겸임할 수 없다.

제 39 조 (선거) 대의원은 각 학부(과/전공)의 학년별 재학생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복수의 추천이면 해당 학년별 재학생의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40 조 (선거시기)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1학년 대의원은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한다.

제 41 조 (등록) 선출된 대의원은 당해 연도 대의원회에 등록한다.

제 42 조 (자격취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학생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43 조 (재선)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재선한다.

제 44 조 (보선)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개시 후 대의원을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는 보선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의장이 사퇴 또는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의장·부의장 궐위 시는 상임위원 중 호선하여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 11 장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제 45 조 (구성) ①대의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③상임위원회는 각 대학별 재적 대의원 수의 비례제로 구성한다.

제 46 조 (선임관리위원회) ①대의원회 상임위원 선임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 47 조 (자격) ①의장·부의장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단, 재선거 시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단, 재선거 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 48 조 (선거) ①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상임위원은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49 조 (선출방법) ①대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②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1차에서 2차까지의 득표누계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정한다.

③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 제 12 장 보 칙

제 50 조 (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25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